



신용카드회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대책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남발,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함.
 -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, 통신사의 카드업 진출이 이어지면서 경쟁심화 조짐이 나타남.
 -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선제적 대책을 마련함.

-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위하여 신용카드 3개 부문에 대한 적정 증가액(율)을 설정하고 회사별로 제시된 목표치를 주(週)단위로 점검할 계획임.
 - 카드자산, 신규 카드발급, 마케팅 비용을 외형확대 위주 영업을 가늠하는 핵심부문으로 정하고, 연간 적정 증가액(율)을 설정하여 감독지표로 활용함.
 -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(율)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, 감독당국은 이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고 조치함.
 -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, 위규행위 발견 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, CEO 및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함.

- 자금조달규제를 전면 정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 도입과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추진함.
 -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함.
 -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도입된 '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' 특례 조항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(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, 금감원, 6/7)